

우체국 다드림(多Dream) 적금 특약

제1조【적용범위】

'우체국 다드림 적금'(이하 '이 예금' 이라 한다)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'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', '적립식예금 약관', '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', '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', 조세특례제한법,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조【예금종류】

이 예금은 적립식 예금이다.

제3조【가입대상】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. (1인 1계좌)

제4조【가입 및 해지】

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, 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.

제5조【가입기간】

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년, 2년, 3년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6조【저축방법】

①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한다.



- ② 이 예금은 가입 시 최저 1만원 이상, 2회차 이후 원단위로 적립 가능하다.
- ③ 이 예금의 저축한도는 매월 50만원 범위 내에서 적립할 수 있다.

제7조【적용이율】

-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epostbank.kr)등에 게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되,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.
-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1.0%p를 제공한다.
 - 1. 가입 시 우체국예금 3년 이상 장기거래 고객 : 연 0.1%p
 - 2. 가입 또는 만기해지 시 우체국예금 우수고객 : 연 0.1%p
 - 3. 다드림 적금 3년 만기 가입 시 : 연 0.2%p
 - 4. 급여이체, 연금수령, 공과금 자동이체, 다드림 적금 월 납부금 자동이체 중 매월 2가지 이상 실적 해당 시 : 연 0.4%p
 - 5. 다드림 통장 (월평잔 100만원 이상) 또는 다드림 체 크카드 (월 10만원 이상) 이용실적 해당 시 : 연 0.2%p

구 분	제공조건	이율 (연, %p)
고객 우대	가입 시 우체국예금 3년 이상 장기거래 고객	0.1
프릭 구네	가입 또는 만기해지 시 우체국예금 우수고객	0.1
장기 우대	다드림 적금 3년 만기 가입 시	0.2
주거래	급여이체, 연금수령, 공과금 자동이체, 다드림 적금 월 납부금	0.4
우대	자동이체 중 매월 2가지 이상 실적 해당 시	0.4
파트너	다드림 통장(월평잔 100만원 이상) 또는 다드림 체크카드	0.2
우대	(월 10만원 이상) 이용실적 해당 시	0.2

③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epostbank.kr)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(약관변경) 절차를 갈음한다.

제8조【이율적용방식】

-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만기 시 까지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한다.
- ② 고객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.
 - 1. 장기거래 고객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예금을 최초로 계좌 개설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경우
 - ※ 단, 예금 가입 취소는 장기거래 고객 산정 기준 에서 제외
 - 2. 우체국예금 우수고객은 신규 가입일 또는 만기해지 시점에 우체국예금 우수고객인 경우
- ③ 장기 우대이율은 다드림 적금을 3년으로 가입을 하고 만



기해지 할 경우 적용한다.

- ④ 주거래 우대이율은 실적 인정기간^{주1} 동안 아래의 각호에서 정하는 우대요건 중 매월 2가지 이상의 실적이 충족되는 개월수가 (1년제 : 6개월, 2년제 : 12개월, 3년 제 : 18개월)^{주2}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.
 - ※ 주1」실적 인정기간은 신규 가입일이 속한 월부 터 만기일이 속한 월의 전전월까지

(예시) '15.12.10일 1년 만기 다드림 적금 가입 시 실적인정기간 : '15.12월부터 ~ '16.10월까지

- ※ 주2」실적 충족 개월 수 산정은 연속된 개월 수 뿐만 아니라 비연속적인 경우도 포함
- 1. 급여이체는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급여성이체 기준*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
 - ※ 급여이체 기준은 『우체국 급여성이체 우대서비스』 제공기준을 따르며 해당 제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된 기준을 따름
- 기관으로부터 50만원 이상의 소속직원 급여이체가 지정급여일(±3영업일)에 있는 경우
- 개인이 급여이체 약정 후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
- 개인이 50만원 이상 입금실적과 급여 등 입금내역 표시가 있는 경우
- 2. 연금수령은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 금융결제원을 통해 일괄 입금되거나 입금 내역에 「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

별정우체국연금 의 글자가 있는 경우

- 3. 공과금 자동이체는 아파트 관리비, 지로, CMS, 펌 뱅킹을 통한 자동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 (납부자 자 동이체, 예약이체 제외)
- 4. 적금 자동이체는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다드 림 적금으로 월 납부금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
- ⑤ 파트너 우대이율은 실적 인정기간^{주1} 동안 아래의 각호에서 정하는 우대요건 중 1가지 이상의 실적이 충족되는 개월수가 3개월 이상^{주2} 인 경우 적용한다.
 - 1. 다드림 통장의 월 평잔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
 - 2. 다드림 체크카드 결제실적이 월 10만원 이상인 경우
 - ※ 주1」실적 인정기간은 신규일이 속한 월부터 만 기일이 속한 월의 전전월까지
 - ※ 주2」다드림 통장 및 다드림 체크카드의 실적은 연속된 개월 수 뿐만 아니라 비연속적인 경우도 포 함
 - ※ 체크카드 승인취소 및 매입취소는 취소한 당월 실적에서 제외하며 체크카드 사용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 (신용결제 제외)

제9조【이자계산】

이자계산은 매회 납입금의 일적수에 이율을 곱하고 365로 나누어 계산하되,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.



제10조【이자지급방식】

-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.
- ② 이 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(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) 이자 지급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.
 - 1. 우체국 창구를 통해 가입한 경우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우체국창구, 인터넷뱅킹, 스마트뱅킹 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되 일수 에 따라 가감하여 이자를 지급
 - 2.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만기일에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 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 (직전 영업일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)
 - ※ 단, 자동만기해지 시 이자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다음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.

제11조【중도해지】

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이 고시한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.

제12조【만기 후 해지】

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

적용한다.

제13조【특별중도해지】

- ① 적금 만기 전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한 경우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가입당시 기본이율을 적용하되, 가입 후 6개월 미 경과한 예금은 일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다.
- ② 특별한 사유라 함은 가입기간 중 예금주 및 예금주 배우자의 주택구입, 입원, 출산, 유학, 결혼, 이민, 퇴직, 사업장의 폐업에 따라 적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③ 특별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려는 예금주는 특별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와 함께 해당 사유발생 기준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우체국 창 구에 방문하여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.
 - 1. 주택구입 : 등기부등본, 매매계약서
 - 2. 출산 : 산모수첩, 의사소견서, 출생증명서
 - 3. 입원 : 입원 확인서 (2주 이상)
 - 4. 유학 : 입학 확인서 등 유학 확인서류 및 항공권
 - 5. 결혼 : 청첩장, 예식장 계약서, 혼인신고서
 - 6. 이민: 해외이주 신고확인서
 - 7. 퇴직, 폐업 : 퇴직증명서, 폐업사실증명서
 - ※ 예금주 배우자의 사유일 경우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 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 서류 추가 제출



제14조【분할해지】

이 예금은 분할해지가 불가하다.

제15조【과세구분】

이 예금은 일반과세,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.

제16조【기타】

- ①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,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.
- ② 이 예금은 양도, 담보제공이 불가하다.
- ③ 이 예금은 「다드림 패키지 우대서비스」에 따라 다드림 통장에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다.

부 칙

이 특약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